

이사의 권한과 책임, 어디부터 어디까지?

❖ 이사는 어떤 권한을 가지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집행임원이란?

통상 대내외적으로 전무, 상무 등의 직함을 갖지만, 회사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 적지 않다.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은 회사의 기관이 아니며, 단지 정관 등 내부규정이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업무집행권한을 위임 받아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인을 지칭한다.

❖ 이사와 집행임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는 반면,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 받는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며 임기 이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1/3 출석, 2/3 찬성)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될 경우 임기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집행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의 위임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으로, 인사권자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그 임무를 종료시킬 수 있다.

❖ 사외이사란?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를 의미한다.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경영을 외부 인물로 하여금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사외이사는 모두 등기이사이고, 상법상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주권상장법인이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

우, 이사 총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되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사나 집행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는 등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사나 집행임원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등기나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내용에 대해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이사는 경영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사가 고도의 경영판단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잘못된 경영판단에 따라 회사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겸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회사

회사제도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기업인은 주식발행을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모집하고, 기업경영은 투자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담당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이는 자본주의의 주요 요소인 분업과 전문화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의 문제이다. 즉, 경영인은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CEO 전용 제트기, 고급 승용차, 비싼 사무실 등은 이와 같은 대리인 비용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경영인인 이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살펴 본다.

의 영업과 동종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직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두 회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양 회사의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때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란, 그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시 해당 관련 이사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하지만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도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정족수에는 신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결의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단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후보자인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다.

❖ 전화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이사회 개최가 가능한가?

이사는 그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하고 결의하여야 하므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나 서면에 의한 결의, 공람이나 회람 등에 의한 결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 개최는 허용된다.

❖ 등기이사가 아닌 사주가 법적 책임을 지나?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결재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만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가 간혹 있다. 상법은 그러한 실질적인 사주를 ‘업무집행지시자’로 파악하여 이사에 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지점의 설치, 차입거래, 자기거래의 승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사 사임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 즉, 사임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위임에서의 수임인과 같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원을 결한 경우,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지닌다.

글_변호사 엄재민

- 법무법인 화우(02-6003-7524, jmuhm@hwawoo.co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유럽경영대학원(Insead) 경영학석사(MBA)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